

瑞山市事務의民間委託을위한議會同意的件

審 查 報 告 書

産業建設委員會

2000. 2. 8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 2000. 1. 31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2000. 2. 1

라. 上程日字 : 2000. 2. 7 ~ 2. 8

2. 提 案 說 明 要 旨 (提 案 說 明 : 上 下 水 道 事 業 所 長 金 亨 來)

가. 提 案 理 由

-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말 준공되고 2000년 3월 7일 시운전이 완료됨에 따라 시운전 완료후 하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임.

나. 主 要 骨 子

-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 위탁시설물 현황
 - 위 치 : 서산시 양대동 801번지 외 7필지

- 시설명 :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
- 시설규모 : 처리용량 $Q = 30,000 \text{ m}^3/\text{일}$ (분뇨 150kl/일 포함)
 차집관거 $L = 11.52\text{km}$
 부지면적 = $110,000 \text{ m}^2$
 건축물 = 관리동 외 10동
 기타처리장내 조경, 녹지시설
- 위탁사무
 - 하수처리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분뇨포함)
 - 가온 및 난방시설의 관리업무
 - 시설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 수질 유지관리업무
 -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 약품비, 실험실운영에 필요한 초자기구류, 시약류, 동력 및 슬러지처리
 - 차집관로 관리
 - 홍보관 관리
- 위탁기간 : 3년간(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장가능)
- 연간 위탁비 : 1,323백만원(투입인원: 24명)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금번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연말 준공하여 2000년 3월 7일 시운전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 서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써,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위임등) 및 하수도법 제7조, 제17조, 제18조와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관리운영)의 규정을 근거로한 본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은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수용하여 지방공무원의 증원억제와 재정부담의 완화 그리고 환경분야의 경쟁력 제고등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 위 사항과 같이 위탁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질의)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가 위탁관리 할 경우 하자보수 및 운영관리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바, 첫째는 위탁 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 첫째 위탁계약은 1년간으로 하겠음.
- 질의)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의회 동의 이전에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을 한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행위는 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지금까지의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재입찰공고부터 다시 절차를 이행하겠음.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i>137</i>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2. . (제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의견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 <i>2.31</i> .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의견

1. 제안이유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말 준공되고 2000년 3월 7일 시운전이 완료됨에 따라 시운전 완료후 하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것임.

2. 주요골자

□ 서산시 하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 위탁시설물 현황

○ 위 치 : 서산시 양대동 801번지 외 7필지

○ 시 설 명 : 서산시하수처리장

○ 시설규모 : 처리용량 $Q = 30,000m^3/일$ (분뇨 150kl/일 포함)

차집관거 $L = 11.52km$

부지면적 = 110,000 m^2

건축물 = 관리동 외 10동

기타처리장내 조경, 녹지시설

□ 위탁사무

○ 하수처리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 가온 및 난방시설의 관리업무

○ 시설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 수질 유지관리 업무

○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 약품비, 실험실운영에 필요한 초자기구류, 시약류, 동력 및 슬러지 처리

○ 차집관로 관리

○ 홍보관 관리

□ 위탁기간 : 3년간(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장가능)

□ 연간 위탁비 : 1,323백만원(투입인원:24명)

※ 참고사항

□ 그간 추진현황

- '95. 12. 19 -- 서산시하수처리장 착공
- '99. 3. 23 -- 서산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방침 결정
- '99. 7. 1 -- 서산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상시설물로 결정
서산시하수처리장의 8개소(자치행정과, 행정12200 - 1874)
- '99. 7. 24 --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정
- '99. 11. 8 -- 서산시하수처리장 시운전 착수.
(기간 2000년 3월7일까지)
- '99. 12. 27 -- 서산시하수처리장설치및관리조례 제정
- '99. 12. 28 -- 서산시하수처리장 준공

□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